



2020학년도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I. 지원 자격

1. 정원 내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 지도교사,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정원 외 [별첨 1] 참조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

II.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

구 분		모집 인원	모집 정원
정원 내	글로벌 융합인재전형	전국단위 선발	90명
		지역인재 선발	
정원 외	사회통합전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해당자	모집정원의 10% 이내 9명 이내

※ 지역인재선발 지원 자격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학교(담양고서중학교, 한재중학교, 장성남중학교, 남평중학교를 포함)를 최근 1년 이상 다닌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복지원 불가(정원 내 전형에서도 중복지원 불가)

III. 입학 원서 접수

구 분	내 용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2019. 3. 28.(목) 09:00 ~ 4. 4.(목) 17:00 접수 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자기개발계획서 및 추천서 입력	기간 : 2019. 3. 28.(목) 09:00 ~ 4. 5.(금) 17:00 접수 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우편 서류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접수 불가)	기간 : 2019. 4. 4.(목)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접수처 : (우)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처

IV.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우편 제출	입학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의 해당란에 본인의 서명(또는 날인)과 학교장 직인을 받은 후 제출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3cm × 4cm)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공통 학교생활기록부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력 시 단면으로 인쇄하며 '원본대조필' 및 학교장의 직인과 간인을 받은 후 제출 •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출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II를 모두 제출 • 지원자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II를 모두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증명서(없는 경우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부 제출 • 외국유학 학생은 해당국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중1, 중2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본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 제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증빙서류 [별첨 2] 참조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입력	자기개발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제출 없음 	
	담임교사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서는 지원자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입력 	
	교과교사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사 추천서는 수학교사 또는 과학교사가 작성 	

※ 유의 사항

1. 다음의 자료는 입학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교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
 -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 수학·과학 등 교과에 관련된 인증시험 또는 능력시험 점수
2.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및 중학교 1, 2학년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는 해당자만 제출
3. 우편 제출 서류는 모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V.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3단계 전형
방법	학생기록물 평가	종합적 문제해결력 평가	영재성 다면평가
내용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하여 영재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학·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 및 종합적 문제해결력 등을 통한 수학능력 평가	글로벌 융합 과학인으로서의 자질과 탐구역량 및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접수 기간	2019. 3. 28.(목) ~ 4. 4.(목)	2019. 5. 9.(목) ~ 5. 13.(월)	2019. 6. 14.(금) ~ 6. 18.(화)
전형 일시	2019. 4. 5.(금) ~ 5. 9.(목)	2019. 5. 19.(일)	2019. 7. 6.(토) ~ 7. 7.(일) 1박2일
전형 대상	지원자 전체	2단계 등록자	3단계 등록자
선발 인원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전원 선발	15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내 : 90명 (45명을 지역인재 선발 대상으로 선발) • 정원 외: 9명 이내
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공고	2단계 대상자 2019. 5. 9.(목)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3단계 대상자 2019. 6. 14.(금)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3단계 합격자 2019. 7. 25.(목)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 모든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평가 시 이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정한다.

※ 1, 2단계 전형에서 각각 우선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합격자는 다음 단계 전형의 일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 사회통합 전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선정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VI. 최종합격자 선정

※ 3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안내하여 점검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함

※ 3단계 합격발표 이후 출신학교 교육과정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본교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최종합격 되지 않을 수 있음

※ 결격사유에 의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8월 중 안내한 후, 최종합격자는 2019년 12월 말 ~ 2020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임

Ⅶ. 전형료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3단계 전형료
20,000원	30,000원	30,000원

1. 원서 접수 시 전형료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결제
2. 2단계 및 3단계 전형 대상자는 추가 전형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추후 공지함
3.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 및 단계별 전형료는 별도 부담
4.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전형료는 면제(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인부담)
5.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Ⅷ. 유의사항

1. 각 단계별 전형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2. 입학전형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3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함
5.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6. 본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로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으며, 의·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본교 교원의 진학지도 및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음
7. 2022년 3월부터 사감정수 조정으로 인해 퇴사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별첨 1]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나)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나)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그 밖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사회적 이유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7)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 (8)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나) 경제적 이유
 -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아동교육비) 수급권자
 - (2) 차상위 저소득층 : 법정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차상위 의료급여 2종,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사회통합전형 증빙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 별첨 1의 2)-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선정통지서 등) 1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 별첨 1의 4)-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할 보건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일부장관 발급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의 경우) 1부 • 부 또는 모의 귀화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 사실관계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에 부,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여부 등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급여 등)
-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